

專門職司書에 對한 小考

金錫淳

序 言

現代社會의 生態를 考察하면 모든 分野가 漸次 複雜한 過程으로 變遷한다는데 그 特質이 있다. 그러므로 각 部門마다 專門家가 必要하게 되었고 自體의 問題解決을 為한 은갖 努力이 傾注되고 있는 現實下에서 우리 나라 圖書館界만이 例外일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우기 위너(Norbert Wiener)以後 圖書館의 本質이 다큐멘테이션과 인포메이션 센터로서 高度의 機能을 發揮해야 할 새로운 位置에 서야하기때문에 圖書館에 從事하는 司書는 必然적으로 專門知識의 具備가 要請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보다 現代圖書館을 먼저 始作한 나라도에서는 이미 司書가 專門職으로서 法的 社會的 基盤을 마련하고 專門家의 貢獻과 行動力を 지니므로 司書의 質的向上이 이루어졌지만, 低開發이라는 땅지가 불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司書가 專門職에 屬한다는 事實조차 極히 좁은範圍內에서만 알려졌을뿐 專門職論議는 圖書館法問題와 더불어 새로운 脚光을 받기 始作한데 不過하다.

우리 社會에서 辯護士, 計理士, 技師, 醫師等等하면 누구나 專門職으로 認定하여 이들이 社會의으로 優位에 서게 될지라도 當然하다고 생각하지만 司書라면 그저 一般 事務職程度의 職種으로 理解되는 것 같다.

司書가 嚴然한 專門職이요 社會의으로 正當히 評價되어야 하며 報酬面에서도 一般職보다 優待를 받아야 함은 일 自體의 高度性에 비추어 當然之事라 할것이나 그려면서도 이 問題는 結實을 뜻본체 하나의 宿題로 남아 있다.

筆者는 圖書館界에서 寄食하는자가 十有餘年이 되나 過渡期의 한 闖入者에 不過하므로 資格을 갖춘 專門家가 自畫自讀을 하는것 보다 이 問題를 다루는데 일어색할것 같다.

7. 司書의 資格

우리나라에 있어서 司書 또는 司書官이라는 名稱이 國公立機關의 圖書館에서 하니의 職名으로 使用되고 있지만 이것이 專門職으로서 法的 根據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解釋된다. 또한 圖書館學科教授(講師包含), 圖書館長, 司書長 그밖의 要職을 맡고 館界에서 活躍하는 圖書館専門家들이相當數에 達하지만 이분들도 何等의 法的保護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嚴密히 따진다면 아직도 專門職으로서의 司書가 法的으로 認定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今年에는 館界가 待望하는 圖書館法이 制定될 晴狀이 보이거나와 便宜上 여기서 圖書館法案(圖協案)을 法으로 假定한다면 法案 第6條에서

“圖書館事務에 從事하는 專門職員을 司書 및 司書補라 稱한다”

라고 规定하여 비로소 司書가 專門職임을 밝혔다. 다시 專門職으로서의 資格에 對하여는 同法案 第6條 1項에 司書資格으로 서는

- (1) 教育法에 依한 大學을 卒業한 者로서 在學中에 圖書館學科를 專攻한 者.
- (2) 教育法에 依한 大學을 卒業한 者로서 第7條의 司書講習을 修了한 者.
- (3) 教育法에 依한 初級大學을 卒業하고 3年以上 司書補로 勤務한 者로서 第7條의 司書補講習을 修了한 者

로 되어 있다. 第6條 2項에는 司書補資格을 规定하여

高等學校 및 師範學校를 卒業한 者로서 第7條의 司書補 講習을 修了한 者로 되어 있다. 그리고 司書나 司書補講習은 大學에서 文敎部長官의 委嘱을 받아 實施한다고 规定되어 있다.

여기 司書의 資格을 論함에 있어서 몇 가지 問題點은 첫째 司書補를 專門職이라 할 것인가에 對하여 筆者는 異見이 있다. 專門職이라기보다 司書補는 技術者程度로 하는 것이 어쩔까하며 둘째 現在 우리 館界에서 專門家로 알려진 분들로서 外國에 서 圖書館學을 專攻한 者, 延世大學校 附設圖書館學校 卒業者, 舊 國立圖書館學校 卒業者, 延世大學에서 實施한 土曜日 課程 修了者, 司書教師講習을 받은 者等의 既得權에 對하여 어떻게 資格을 附與할 것인가하는 問題를 생각해 볼려 한다. 이 問題는 將次 圖書館法 施行細則으로서 明示될 줄 안다. 셋째 訓練을 받지 않고 長期間 圖書館에 勤務한 者에 對하여도 어떤 節次를 거쳐 救濟措置가 考慮되기를 希望하지만 亦是 法 施行細則에서 다루어질

問題라고 본다.

何如間 司書의 法的 資格은 圖書館法에 依하여 確定될 것이고 國家에서 正式으로 資格附與가 있어야 할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司書의 形式的 資格이 갖추어 지는 것이다. 그러나 完全한 司書의 資格者란 이러한 圖書館法에 依하여 國家에서 주는 法的 資格과 圖書館實務面에 있어서의 모든 技術的 難題를 解決할 수 있는 實力이 兼備되었을 때 비로소 名實相符한 有資格者라 할 것이다.

司書職이 存在한지는 꽤 오래된 일에 屬하지만 專門職으로서 臨頭된 것은 西歐諸國에서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法官이나 教授못지 않게 社會의으로 認定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資格이 하나의 專門職으로서의 갖춘바 遷色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司書의 資格問題는 疏忽히 여김이 없이 專門職으로서의 自己分野를 開拓하고 自己位置를 지킬 수 있도록 優重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I. 司書의 資質

무슨 事業에서 나 人的要素가 무거운 比重을 찾이하는 것이 事實이지만 특히 圖書館을 運用하는 가장 큰 要素가 “사람”이라 할 것이다. 圖書館에서 人類가 蓄積한 審知의 總和인 資料를正確하고 便利하게 整理하며 鄭重하고 親切하게 利用者를 管理하면서도 嚴格한 秩序를 維持하여 智德이 兼備한 人材를 選任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事實上 司書의 資質如何에 따라 圖書館의 成敗를 評가하는 境遇가 많기 때문에

司書는 法的 技術的 資格과 아울러 人間 自體의 資質이 大端히 好아야 한다. 印度의 世界的인 圖書館學者 란가나단(Shiyali, Ramamrita Ranganathan)은 그의 圖書館 學 5原則에서 微底한 奉仕精神을 強調하였거니와 司書는 人類에 對한 奉仕者라는 使命感을 가져야함은 勿論, 무엇보다도 性格이 좋은 사람이라야 基本的으로 司書의 資質을 가졌다 할 것이다. 司書는 職務와 責任이 다른 業務에 比해 特히 重大한 만큼 高度의 人間性이 要求된다. 그러나 司書도 人間인 以上 缺點도 있고 失手도 한다. 司書의 資質論에 對하여는 異口同聲으로 理想的인 人間型을 그리는 것이 普通이며 人間의 美德을 있는대로 羅列하지만 筆者の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은 目標를 두었으면 한다.

- (1) 좋은 性格의 所有者.
 - (2) 부지런한 者.
 - (3) 廣汎한 基礎知識이 있는 者.
 - (4) 圖書館學의 專門知識이 있는 者.
 - (5) 公平無私한 者.
 - (6) 激務에 擔임할 수 있도록 健康한 者.
- 等을 들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司書가 반드시 才才라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우리 社會에 있어서 가장 차하고 誠實한 人材를 要求하게 되며 社會教育者로써 大學의 課外指導者로 奉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二. 司書의 養成

資料의 洪水를 맞난 現代圖書館이 複雜하고 難避한 業務들을 遂行하는데 專門知識이 없이는 不可能하기 때문에 專門職司書의 養成은 絶對로 必要하다.

美國에서도 얼마前까지는 圖書館職員

養成을 單純히 整理技術習得에 目標를 두었으나 社會의 進展에 따라 碩士課程, 博士課程의 專門職 教育機關을 設置하고 科學的 學術的研究를 通한 專門職養成에 힘을 기우리게 되었다. 司書의 養成은 他 專門教育에서와 같이 正規의 方法으로 行하는데 있어서 一般 基礎教育을 받은 程度가 높으면 높을수록 圖書館教育의 效果가 增大하는 것이므로 圖書館教育은 一般大學卒業者를 入學資格으로 하는 大學院 課程에 重點을 두는 것이 專門職養成을 爲하여 理想의 일것 같다. 勿論 그 社會의 教育水準과 關聯性이 있는 것어서 우리나라의 大學 學士課程만으로 充分하다고 할 런지 모르나 專門職으로서 社會의 地位를 確立하는데는 적어도 6年間의 高等教育을 받도록 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英國에는 大學卒業者를 入學資格으로 하는 二年課程의 專門職 養成機關이 廉價大學에 設置되어 있으며 西獨에서도 大學卒業者를 二年間 訓練시키는 大學이 있다. 日本의 境遇는 慶應大學에 圖書館學科가 있는데 入學資格으로 大學2年修了者 舊制專門學校卒業者 大學卒業者 等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現在 延世大學校와 梨花女子大學校에 學士課程의 圖書館學科가 設置되어 있고 今年 中央大學校에도 圖書館學科를 新設하였다. 여기서 卒業하면 學士學位를 받게 될것인바 學士學位는 一般大學의 무수한 科를 卒業하면서 얻어진다. 그러므로 圖書館學科 出身者만이 特待를 받을理由나 根據가 稀薄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例를 들면 一般大學 卒業者와 圖書館學科 卒業者가 다같이 어떤 大學에 就職을 해서 하나는 庸務일을 보고 하나는 圖

書館에서 勤務하게 될 境遇 果然 圖書館에 勤務하는 者만이 優待를 받을 理由가 있을까? 筆者の 생각으로는 大學에 圖書館學 積土課程, 博士課程을 擴充하여 먼저 學問의 優位을 찾이 해야만 優待의 條件이 成立될 것으로 믿는다. 勿論 大學院의 定員問題等 隘路도 있을 것이지만 專門職의 權威를 為하여 一考할 問題이다. 現在도 積土課程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하자면 學士課程대신 積土課程을擴充하자는 말이다. 다음 圖書館의 實務的 技術者로서는 副司書로 充用하면 될 것이다. 圖書館法草案에는 司書補로 되어 있으나 筆者は 이를 副司書로 稱하였으면 한다. 副司書의 養成은 高等學校卒業者를 初級大學課程으로 2年間訓練을 시켜 實務를 擔當토록 하면 될 상 싶다. 傳聞한 바로는 日本에서도 文部省 圖書館職員 養成所를 短期大學(初級大學)으로 改編했다고 한다. 圖書館業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모두가 大家요 權威者인 수는 없는 것이므로 學的이 아닌 技術業務에는 初級大學 2年課程의 履修로서 足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므로 司書를 2區分하여 專門職으로서의 司書는 大學院課程으로하고 技術者로서의 副司書는 初大課程을 履修토록 할 것을 主張하는 바이다. 다시 말하면 專門職으로서의 司書와 技術者로서의 副司書를 두자는 것이다.

學士課程卒業者에게 一定한 經驗年數에 依하여 司書檢定考試受驗資格을 줌으로司書가 될 길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講習會는 圖書館에 勤務하는 職員의 再訓練, 司書教師養成 또는 資格取得을 為한 訓練機關으로 設置할 價値가 있을 것

이다.

다음 國家로서 司書資格 檢定考試制를 두어 一定한 入試資格 基準下에서 正規訓練을 받지 않은者나 勤務經驗者들에게 專門職 또는 技術者로서의 進出의 길을 열어줄 必要가 있을 것이다.

己. 司書의 待遇

우리 館界에서 司書를 優待하라는 喻聲은 일어난지 이미 오래지만 圖書館 運營者들은 馬耳東風格으로 통 反應이 없다. 圖書館人事에 있어서 國立이나 公立圖書館의 境遇를 보면 그것이 公共이건 大學이건 特殊이건 公務員으로任命을 받게된다. 따라서 公務員으로서의 職位 公務員으로서의 報酬規程이 適用되므로 아무런 優待가 되지 못하며 現在로서는 司書의 任用基準이 없기 때문에 全然訓練을 받지 않은者를 圖書館員으로 採用할 수도 있고 專門教育을 받은者라도任命權者的任意로 圖書館이 아닌 他部署로의 轉出이 可能하다. 大學같은데서도 專門知識에 關係없이 任免될 뿐 아니라 司書職을 優待할 根據가 없으므로 一般事務職員과 같이 取扱하고 있는 實情이다. 僥倖一般的으로 報酬가 厚한 大學에 勤務하는 圖書館員은相當한 待遇를 받는 셈이오 待遇가 좋지 않은 大學에 勤務하게 되면 이에 따라 薄한 待遇를 받게 되는 것이다. 얼마前에 筆者が 우리나라 몇개 大學圖書館員의 俸給을 알아보았더니 그야말로 千差萬別이었다. 아주 待遇가 좋은 圖書館에서는 圖書員이 月 萬 원主任級이 月 四千원程度의 收入이 있는가 하면 어떤 大學에서는 圖書員의 收入이 月 5千원에도 未達인 境遇가 있었다. 特殊圖書館의 境遇도 그 機關

一般的 待遇基準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이다.

司書의 身分, 任用, 待遇基準을 設定하
므로 公務員으로서의 司書는 3級以上으로
하여 級階上 優待를 하고 債給表도 別途
策定해야 할 것이다. 大學에 있어서는 司
書를 初任時 專任講師程度의 線으로 待遇
하여 報酬基準을 教授에 두어야만 할것으
로 생각한다. 特殊圖書館에 있어서도 一
般職員과는 區分하여 職務手當等을 加算
하므로 優待할 수 있을 것이다.

副司書의 待遇基準은 一般職員程度로
하는 것도 不可避할 것이다.

아무던지 專門職司書의 社會的 地位나
收入을 大學教授程度로 하고 公務員인 境
遇 3級以上으로 登用하게끔 되어야 實質的
의 優待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為하
여는 于先 優待 받을 條件을 갖춘 後에 權
利를 主張하는 것이 事理에 맞을 것 같다.

結 言

대체로 우리나라의 現職 圖書館人들의
實態를 살펴보면 圖書館訓練을 받고 實務
經驗이 많은 少數의 百鍊之將과 正規訓練
을 받지 못했으나 圖書館業務遂行에 能熟
한 분들과, 訓練을 받았으나 館務에 서투
른 분들과 訓練도 받지 못했고 일에도 未
熟하고 熟意도 없는 분들도相當數가 있
을 것으로 안다. 이들은 專門職問題에 모
두가 見解差를 보이게 될 것인바 언젠가
는 圖書館法에 依한 判別이 될것이며 人的
面貌도 크게 달라질것으로 안다.

敘上한바 筆者는 專門職 司書의 基準을
높이고 司書를 優待하는as 愚見을 내노았
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處한 立場에서 보
면 非現實的인 問題라고 一蹴當해 버릴련
지 모르나 館界와 앞날을 為하여 하나의
問題를 提起하는 바이다.

(筆者: 建國大學校 圖書館 副館長)

圖書館用語集

—解說附—

값 300 원

韓國目錄規則(案)

(標目的 選定, 形式 篇)

값 200 원

1962 年度

韓國圖書館協會 技術委員會 編

서 뜻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

1962

(限 定 版)

* 殘餘部數가 얼마 남지 않았아오니 購入하실분은
早速히 申請하시기 바라나이다